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55호 2018. 4. 24.(화)

【조 례】

제1171호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172호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4
제1173호 공주시 전·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	6
제1174호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8
제1175호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10
제1176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제1177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1178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68
제1179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75
제1180호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82

【규 칙】

제538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88
제539호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90

【훈 령】

【예 규】

【공 고】

【고 시】

제2018-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1
제2018-8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03
제2018-85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05
제2018-8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07

회 람							
--------	--	--	--	--	--	--	--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71호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

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 (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72호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
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주시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사단
령」에 따라 해병대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공주시장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하천변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3. 그 밖에 공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전·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73호

공주시 전·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안활동 협력과 지역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전·의경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주시 전·의경회(이하 “전의경회”라 한다)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경찰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공주시장은 전의경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를 위한 치안 활동 협력 사업
2.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 및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
3. 그 밖에 공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공주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75호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구호 및 복구사업에 드는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간접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조(지급방법)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

용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재난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착오로 지원금 또는 물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유선전화	() -	통신사명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교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확인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인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인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공주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공주시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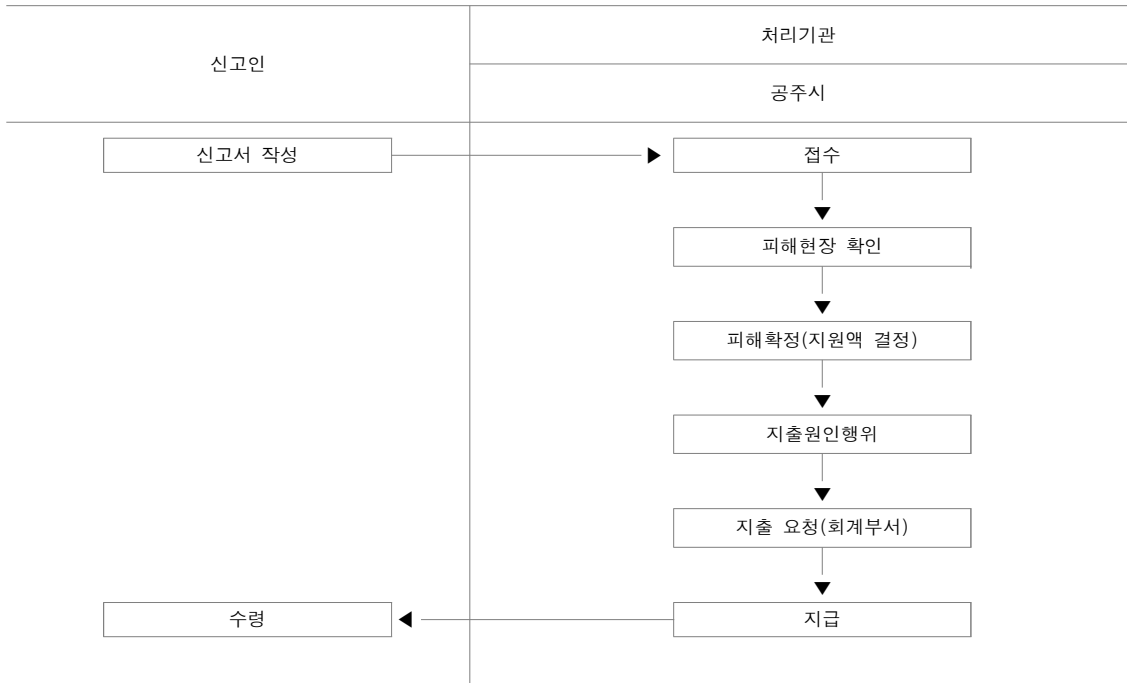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76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

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7.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각종 주의보·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시장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다만, 해당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③ 본부장은 공주시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

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

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3. 공주소방서장. 단, 공주소방서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과장. 단, 기능별 협업부서의 과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 팀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 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의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p>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p>	<p>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p>
	<p>4) 행정지원팀</p>	<p>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 업무 지원</p>
<p>나. 협업기능반</p>	<p>1) 긴급생활안정지원반</p>	<p>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p>
	<p>2) 재난현장환경정비반</p>	<p>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p>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p>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p> <p>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p>
8) 교통대책반		<p>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p> <p>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p> <p>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p> <p>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p> <p>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p> <p>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p> <p>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p> <p>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p> <p>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p>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p>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p> <p>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p> <p>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p> <p>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p>
11) 사회질서 유지반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p> <p>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p> <p>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p> <p>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p>
12) 수색, 구조 구급반		<p>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p> <p>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p> <p>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p> <p>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p>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		<p>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p>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 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공주시 주관부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정보통신 사고	미디어담당관
2.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과 건설과
3. 산업통상자원부	1.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나. 전력 사고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
4.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과 보건과
5. 환경부	3.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4.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5.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자원과 수도과 환경자원과
6. 고용노동부	6.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경제과
7. 국토교통부	7. 가. 고속철도 사고 8. 나. 도로터널 사고 9.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10.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교통과 건설과 교통과 허가과
8. 행정안전부	11. 가.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12. 나.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수도과 농정유통과
9. 문화재청	13.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재과
10.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 관	차장	본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 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 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가. 준비단계

- 가동기준 :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안전관리과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산업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3+ α + β 명	
	반 장	안전관리과장	
	1) 상황 관리 총괄반 (2명)	재난상황관리 재난보고서작성 분석평가	·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2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사회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자원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미디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기업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사회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공주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공주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3585부대 3대대,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한전 공주지사, KT공주지점, 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그 외 재난상황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별로 1명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산업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5+ α + β 명	
	반 장	안전관리과장	
	1) 상황 관리 총괄반 (4명)	재난상황관리 재난보고서작성 분석평가	·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4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사회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자원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미디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기업경제과
		바) 재난수습 흥 보반	·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사회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공주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공주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3585부대 3대대,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한전 공주지사, KT공주지점, 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전직원 1/2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비상3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산업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1+ α + β 명	
	반 장	안전관리과장	
	1)상 황 관 리 총 괄 반 (10명)	재난상황관리 재난보고서작성 분석평가	· 안전관리과 10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사회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자원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미디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기업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 보반	·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사회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공주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공주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3585부대 3대대,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한전 공주지사, KT공주지점, 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전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산업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8+ α + β 명	
	반 장	안전관리과장	
	1) 상황 관리 총괄반 (7명)	재난상황관리 재난보고서작성 분석평가	· 안전관리과 7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사회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자원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미디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기업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사회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공주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공주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3585부대 3대대, 공주경찰서, 공주소방 서, 한전 공주지사, KT공주지점, 가스안 전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 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사회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전 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비상 1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1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

		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현장조치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르는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재난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단계의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77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규칙” 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9조의2 단서 중 “기존” 을 “포장된 기존” 으로, “농로(포장된 도로)” 를
“농로” 로,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도로의 폭이 3미터(포장면
기준)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를 “5천제곱미터 미만은 기존도로
최소폭이 3미터 이상(포장면 기준) 확보된 경우, 시장이 개발행위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로 한다.

제25조 중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후”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보증금 예치는 공주시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 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 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32조 중 “수변경관지구” 를 “특화경관지구” 로 한다.

제34조 중 “미관지구” 를 “경관지구” 로, ① “영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 를 “① 영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 로 한다.

② “영 제73조제1항” 을 ② “영 제72조제1항” 으로 “미관지구” 를 “경관지구” 로 한다.

③ “미관지구” 를 “경관지구” 로 한다.

제35조 중 “미관지구” 를 “경관지구” 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를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 로 한다.

제36조 중 “미관지구” 를 “경관지구” 로,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를 “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 로 한다.

1. “중심지미관지구” 를 “시가지중심경관지구” 로 한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를 “특화경관지구” 로 한다
3. “일반미관지구” 를 “시가지일반경관지구” 로 한다

제37조 중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를 “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 로, “미관지구” 를 “경관지구” 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을 “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42조제16호 중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유원지” 를 “유원지” 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10조제2항과 같다.

제54조제3항 중 “도시계획업무” 를 “부시장과 도시계획업무” 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4조제2항” 을 “법 제113조제3

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분과 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제5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사항 제5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출석위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관련 심의
4.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공동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업무 담당주사가” 를 “업무팀장이” 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는 201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관련)

4층 이하(「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 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제9호(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4호관련)

2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4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및 제30조제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미만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8호 및 제30조제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및 제30조제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삭제(2016.11.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및 제30조제1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 및 공작물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동호 다목, 마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및 제30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제30조제1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6]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및 제30조제1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과 제30조제1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
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들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30조제1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4호의 제1종,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사업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만 해당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2조 별표 2 및 제30조제23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과 주요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 금강합류지점부터 사곡면 해월리와 신평면 영정리가 만나는 지점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5.6.26.)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주택의 1호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증가목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을 말하며, 제1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78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
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에서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공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5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경찰서 등과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 하되,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법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 CCTV통합관제 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사업이 완료된 뒤,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문성을 갖춘 공주경찰서 또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

NO. 성 명

평가지표	5점 척도					점수
	1	2	3	4	5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	1	2	3	4	5	
	10년에 1회	5년에 1회	3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1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	1	2	3	4	5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	1	2	3	4	5	
	영향 없음	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	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	중대재해 (상해, 5백만원 이상 손해 등)	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	1	2	3	4	5	
	중위소득층 이상	중위소득층 ¹⁾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침입위험도	1	2	3	4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음	보통	위험	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	1	2	3	4	5	
	3인 가구 이상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	1	2	3	4	5	
	5년 이하	5 ~ 10년	10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	1	2	3	4	5	
	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	침입이 어려운 유형(아파트, 주상복합 등)	보통 (연립주택 등)	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단독주택, 다세 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	1	2	3	4	5	
	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	감시시설 유 (CCTV 있음)	감시가능 여부 보통	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	감시시설 無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	1	2	3	4	5	
	5Km 이하	4Km 이하	3Km 이하	2Km 이하	1Km 이하	
야간 밝기	1	2	3	4	5	
	매우 밝음	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등 조도 등)	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	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	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Hot Spot)	1	2	3	4	5	
	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멀	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	보통	범죄다발지역 인접	범죄다발지역	
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1) 통계청 중위소득계층 참고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79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

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2.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시장(市場)”이라 한다)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회 등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장(市場)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市場)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市場)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 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상인회 재정지원) 시장은 상인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市場)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비용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市場),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
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
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
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발생시설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장(市場),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
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상
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 협약을 체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수익금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익금 정산 등) 수탁자는 상·하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주차장 조례」,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및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4.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조례 제1180호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주 하숙마
을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를 “공주하숙마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를 ““공주하숙마을”(이하 “하숙마을”)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게스트하우스”를 “하숙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스트하우스를”을 “하숙마을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운영 계획)”을 “(운영 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게스트하우스”를 각각 “하숙마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하숙마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원도심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거친 마을해설사를 활용하여 밤마실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4:00”을 “15:00”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게스트하우스를”을 “하숙마을을”로, “게스트하우스”를 “하숙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하숙마을 내 숙박시설 및 전시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용료 감면) 하숙마을 내 시설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게스트하우스”를 “하숙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게스트하우스”를 “하숙마을”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게스트하우스를”을 “하숙마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게스트하우스”를 각각 “하숙마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게스트하우스”를 “하숙마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설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숙박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시설별	정원(명)	사용요금(원)		비 고
		비수기/주중	성수기/주말/공휴일	
2인실	2	70,000	90,000	▸정원 초과시 -1명당 10,000원
3인실	3	80,000	100,000	▸성수기 - 7.25. ~8. 21.
4인실	4	90,000	110,000	▸부가차세 포함

(참고사항)

-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5:00 ~ 다음날 11:00
- 2) 주중(일요일~목요일), 주말(금요일~토요일), 공휴일(법정공휴일 전일)

전시실 사용료(제6조 관련 신설)

구 분	면 적	1일 사용료	비 고
전시실	54㎡	64,800원	1,200원/㎡ 부가세 포함

(참고사항)

- 1)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 2) 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일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 3)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 4) 시설의 최대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별표 2]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6조의2 관련)

구 분	감면율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 공주하숙마을 1회 이상 이용 고객	20%
3. 원도심 여행단(10명 이상 단체)	20%
4.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20%
5.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	20%
6. 온누리시민으로 가입된 사람으로 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
7. 홍보 등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숙박이 필요한 사람	20%

전시실 사용료 감면 기준(제6조의2 관련)

구 분	감면율
1. 공주하숙마을에 숙박하는 경우	면제
2.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면제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2018년도 제6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18. 4. 18.)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규칙 제538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근무가 끝난 날을” 을 “근무 종료일에” 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근무 종료일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2018년도 제6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18. 4. 18.)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박 용 권 부 시 장

2018년 4월 24일

공주시 규칙 제539호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25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04 월 24일

공 주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국도36호선 (보령~울진선)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107,562㎡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680(도)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2.584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국도36호선 (보령~울진선)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104,705㎡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1-20(임)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2.584km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6호선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구간의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3년 05월20일 ~ 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불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전화 044-200-3233)
행복도시 ~ 공주 도로 확장공사 감리단 (전화 044-868-8727)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공주	송선	680-4	680	도	도	7,834	7,834	7,834	국토해양부	국					
2	공주	송선	429-6	429-6	천	천	37	37	37	국토해양부	국					
3	공주	송선	642-20	642-20	천	천	299	299	299	국토해양부	국					
4	공주	송선	416-6	416-6	임	임	1,428	1,428	1,428	국토해양부	국					
5	공주	송선	642-1	642-1	천	천	2,808	525	525	국토해양부	국					
6	공주	송선	642-11	642-11	제	제	1,176	290	290	국토해양부	국					
7	공주	송선	689-1	689-1	도	도	899	357	357	국토해양부	국					
8	공주	송선	642-12	642-13	답	전	662	34	34	국토해양부	국					
9	공주	송선	428-6		답		1,266	58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10	공주	송선	428-3		답		374	56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11	공주	송선	642-14		답		171	17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12	공주	송선	144-4	144-4	전	전	30	30	30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13	공주	송선	642-156	642-156	제	제	436	436	436	국토해양부	국					
14	공주	송선	642-137	642-137	천	천	1,109	1,109	1,109	국토해양부	국					
15	공주	송선	642-153	642-153	제	제	712	712	712	국토해양부	국					
16	공주	송선	423-4	423-4	답	답	333	333	33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17	공주	송선	146-2	146-2	답	답	210	210	210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18	공주	송선	147-3	147-3	전	전	82	82	82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19	공주	송선	147-4	147-4	전	전	50	50	50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0	공주	송선	671-1	671-1	도	도	153	153	153	국토해양부	국					
21	공주	송선	177		전		3	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금회해제
22	공주	송선	177-2		전		215	215	215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3	공주	송선	176-2		답		37	37		금학동 187 대인맨션 3-204	이공하					금회해제
24	공주	송선	176-6		답		173	173	17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5	공주	송선	183-6		대		57	57		금학동 187 대인맨션 3-204	이공하					금회해제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26	공주	송선	183-15	183-15	대	대	140	140	14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27	공주	송선	182-2	182-2	답	답	538	538	53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28	공주	송선	183-9		전		27	5		송선동 183-6	오수남					금회해제
29	공주	송선	183-5		전		69	13		송선동 217	이은중					금회해제
30	공주	송선	183-17	183-17	전	전	13	13	1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31	공주	송선	183-4		전		293	9		동현동 347	신인상					금회해제
32	공주	송선	183-14	183-14	전	전	46	46	4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33	공주	송선	183-7	183-18	대	대	26	29	2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34	공주	송선	183-16	183-16	대	대	292	292	29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35	공주	송선	672	672	도	도	57	7	7	국토해양부	국					
36	공주	송선	183-12	183-12	전	전	76	76	7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37	공주	송선	171	171-3	임	임	74	83	7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38	공주	송선	171-2	171-2	임	임	228	228	22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39	공주	송선	672-1	672-1	도	도	139	139	139	국토해양부	국					
40	공주	송선	672-2		도		478	3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41	공주	송선	183-8	183-8	전	전	348	348	34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42	공주	송선	183-13	183-13	도	도	200	200	2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43	공주	송선	184-6	184-6	대	대	3	3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44	공주	송선	184-7	184-7	대	대	112	112	11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45	공주	송선	184-9	184-9	전	전	87	87	8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46	공주	송선	184-8	184-8	답	답	151	151	15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47	공주	송선	642	642	구	구	1,256	201	201	국토해양부	국					
48	공주	송선	448		전		1,067	1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금회해제
49	공주	송선	443-6	443-6	임	임	183	89	89	공주시	공					
50	공주	송선	443-26	443-26	임	임	163	163	163	국토해양부	국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51	공주	송선	443-17	443-17	임	임	27	20	20	국토해양부	국				
52	공주	송선	443-12	443-12	임	임	120	9	9	공주시	공				
53	공주	송선	443-24	443-24	임	임	31	31	31	공주시	공				
54	공주	송선	443-27	443-27	임	임	200	200	2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55	공주	송선	428-5	428-5	도	도	10	10	10	월송리 27	이은대				미불용지
56	공주	송선	산67-33	산67-33	도	도	231	231	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57	공주	송선	443-28	443-28	임	임	166	166	16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58	공주	송선	143-14	143-14	도	도	148	148	148	국토해양부	국				
59	공주	송선	143-9		도		67	7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60	공주	송선	680-4		도		2,617	14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61	공주	송선	144-9	144-9	대	대	32	32	3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62	공주	송선	642-161	642-161	답	답	2	2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63	공주	송선	642-160	642-160	체	체	48	48	48	국토해양부	국				
64	공주	송선	642-151	642-151	답	답	334	334	33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65	공주	송선	179-5	179-5	답	답	508	508	50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66	공주	송선	179-3	179-7	답	답	6	5	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67	공주	송선	179-6	179-6	답	답	36	36	3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68	공주	송선	180	180-3	답	답	20	43	2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68-1	공주	송선		180-4	답		24		2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69	공주	송선	180-2	180-2	답	답	33	33	3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70	공주	송선	642-139	642-139	천	천	4,683	17	17	국토해양부	국				
71	공주	송선	642-140	642-140	천	천	19,662	19,662	19,662	국토해양부	국				
72	공주	송선	189-2	189-2	답	답	209	209	20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73	공주	송선	662-11	662-11	구	구	3,320	206	206	농림수산식품부	국				
74	공주	송선	186-3	186-4	천	천	158	436	15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75	공주	송선	187	187-2	대	대	556	556	55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76	공주	송선	667	667	구	구	605	267	267	농림수산식품부	국				
77	공주	송선	199-2	199-2	답	답	850	850	8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78	공주	송선	44-1	44-1	전	전	97	97	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79	공주	송선	655-1	655-1	도	도	328	328	328	국토해양부	국				
80	공주	송선	71-2		천		2,631	22		기획재정부	국				금회해제
81	공주	송선	71-22	71-22	답	답	8	8	8	기획재정부	국				
82	공주	송선	71-16		답		600	6							금회해제
83	공주	송선	71-20	71-20	천	천	428	428	428	기획재정부	국				
84	공주	송선	70-3	70-3	천	천	57	67	6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85	공주	송선	642-145		천		5,090	67							금회해제
86	공주	송선	190-4	190-4	천	천	493	493	4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87	공주	송선	674-1	674-1	도	도	206	206	206	국토해양부	국				
88	공주	송선	190-5	190-5	천	천	205	205	2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89	공주	송선	197	197	천	천	436	436	4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90	공주	송선	196-1	196-1	천	천	954	954	9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91	공주	송선	193-3	193-3	천	천	297	297	2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92	공주	송선	193-1	193-4	천	천	10	6	10	송선동 204	전주이씨덕천 군파금 동종중 회				미불용지
93	공주	송선	195-2		답		1,398	59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8	황인미				금회해제
94	공주	송선	195-1	195-1	천	천	668	668	66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95	공주	송선	198	198	답	답	519	519	5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96	공주	송선	195-3	195-3	답	답	66	66	66	국토해양부	국				
97	공주	송선	45-1	45-1	천	천	1,504	1,504	1,5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98	공주	송선	45-3	45-3	답	답	1,000	1,000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99	공주	송선	657-8	657-8	구	구	380	380	380	농림수산식품부	국				
100	공주	송선	657-9	657-9	구	구	127	127	127	농림수산식품부	국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01	공주	송선	53-5	53-5	답	답	3	3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02	공주	송선	642-143	642-143	천	천	56	15	15	국토해양부	국				
103	공주	송선	55-3		전		2,023	87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 175-5	김천기외1인				금회해제
104	공주	송선	624-144	624-144	천	천	7,987	147	147	국토해양부	국				
105	공주	송선	69-2	69-2	답	답	283	283	28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06	공주	송선	69		답		1,619	3		송선동 59	이정주				금회해제
107	공주	송선	68		답		790	4		봉황동 52	이영숙				금회해제
108	공주	송선	68-4	68-4	답	답	4	4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09	공주	송선	66		답		1,023	260		대전서구만년동1-2 강변아파트111-1202	정두희				금회해제
110	공주	송선	66-2	66-2	답	답	264	264	26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1	공주	송선	642-146	642-146	천	천	861	861	861	국토해양부	국				
112	공주	송선	92-2	92-2	답	답	884	884	88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3	공주	송선	642-149	642-149	천	천	2,410	2,410	2,410	국토해양부	국				
114	공주	송선	641	641	도	도	7,537	386	386	국토해양부	국				
115	공주	송선	80-4	80-4	답	답	264	264	26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6	공주	송선	82-9	82-9	답	답	312	312	3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7	공주	송선	82-10	82-10	장	장	338	338	3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8	공주	송선	642-147		천		294	26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119	공주	송선	93	93-2	답	답	38	34	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20	공주	송선	642-148		천		272	10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121	공주	송선	90		창		619	2		공주시 우성면 환천리 175-23	장명순				90-3으로 합병되어 말소
122	공주	송선	90-2	90-2	창	창	315	315	3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23	공주	송선	86-2	86-2	전	전	747	747	7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24	공주	송선	84-2	84-2	답	답	138	138	1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25	공주	송선	84-3	84-3	답	답	4	4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공주	동현	641-10	641-10	구	구	322	322	322	농림수산식품부	국				
2	공주	동현	156-7	156-7	답	답	1,078	1,078	1,078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3	공주	동현	156-6	156-6	답	답	671	671	671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4	공주	동현	161-10	161-10	답	답	531	531	531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5	공주	동현	160-1	160-1	답	답	31	31	31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6	공주	동현	161-2	161-12	답	답	9	15	9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7	공주	동현	159	159	답	답	1,103	1,103	1,10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8	공주	동현	161-11	161-11	답	답	400	400	400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9	공주	동현	161-9	161-9	답	답	516	516	516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10	공주	동현	55-4	55-4	답	답	995	995	995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11	공주	동현	56-4	56-4	답	답	82	82	82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12	공주	동현	57-9	57-9	답	답	39	39	39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13	공주	동현	662-1	662-1	도	도	734	734	734	국토해양부	국				
14	공주	동현	662	662	도	도	1,187	50	50	국토해양부	국				
15	공주	동현	641-3	641-3	구	구	619	619	619	농림수산식품부	국				
16	공주	동현	641-4	641-4	구	구	6,271	847	847	농림수산식품부	국				
17	공주	동현	649	649	도	도	4,360	317	317	국토해양부	국				
18	공주	동현	58-2	58-5	답	답	23	17	23	국토해양부	국				
19	공주	동현	60-10	60-10	답	답	73	73	7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0	공주	동현	58	58-6	답	답	2	5	2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1	공주	동현	58-3	58-3	답	답	35	35	35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2	공주	동현	62-1	62-1	답	답	145	145	145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3	공주	동현	63-4	63-4	답	답	195	195	195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4	공주	동현	57-2	57-12	답	답	9	11	9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25	공주	동현	57-10	57-10	답	답	39	39	39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26	공주	동현	53-3	53-3	답	답	698	698	69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27	공주	동현	647-1	647-1	도	도	48	48	48	국토해양부	국				
28	공주	동현	647-2		도		44	44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29	공주	동현	53-1		답		55	55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30	공주	동현	32-1		답		314	314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31	공주	동현	647-3	647-3	도	도	180	180	180	국토해양부	국				
32	공주	동현	54-3	54-3	답	답	253	253	25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33	공주	동현	27-22	27-22	임	임	2,986	2,986	2,986	국토해양부	국				
34	공주	동현	641	641	구	구	16,737	1,341	1,031	농림수산식품 부	국				
35	공주	동현	68	68	답	답	694	694	694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36	공주	동현	74-5	74-5	답	답	1,942	1,942	1,94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37	공주	동현	73	73	답	답	456	456	456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38	공주	동현	69-3	69-3	답	답	1,133	1,133	1,13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39	공주	동현	75-4	75-4	답	답	609	609	609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40	공주	동현	648	648	도	도	2,364	2,364	2,364	국토해양부	국				
41	공주	동현	72-1	72-1	답	답	1,094	1,094	1,094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42	공주	동현	76-1	76-1	답	답	410	410	410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43	공주	동현	34		전		962	770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44	공주	동현	34-2		임		1,983	106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45	공주	동현	31-4		답		84	84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46	공주	동현	32-2	32-2	답	답	308	308	30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47	공주	동현	31-2	31-2	답	답	105	105	105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48	공주	동현	32	32-4	답	답	23	23	2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49	공주	동현	27-11	27-28	임	임	12	12	1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50	공주	동현	27-24	27-24	임	임	234	12	1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51	공주	동현	27-23	27-23	임	임	4,598	4,598	4,598	국토해양부	국					
52	공주	동현	27-6		임		120	6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53	공주	동현	27-7		임		307	14		국토해양부	국					금회해제
54	공주	동현	69-2	69-2	제	제	542	542	542	공주시	공					
55	공주	동현	69-7	69-7	제	제	398	398	398	공주시	공					
56	공주	동현	641-5	641-5	구	구	2,759	2,759	2,759	농림수산식품부	국					
57	공주	동현	27-27	27-27	임	임	13	13	1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58	공주	동현	69-5	69-5	제	제	91	91	91	공주시	공					
59	공주	동현	27-25	27-25	임	임	55	55	55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60	공주	동현	27-26	27-26	임	임	1	1	1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61	공주	동현	27-21	27-21	답	답	552	552	552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62	공주	동현	26-15	26-15	전	전	69	69	69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63	공주	동현	641-11	641-11	구	구	83	83	83	농림수산식품부	국					
64	공주	동현	641-8	641-8	구	구	182	182	182	농림수산식품부	국					
65	공주	동현	26-9	26-9	임	임	12	12	12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외1인					관리전환 대상
66	공주	동현	25-31	25-31	임	임	352	352	352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67	공주	동현	25-25	25-25	창	창	183	183	18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68	공주	동현	24	24	창	창	179	179	179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69	공주	동현	25-26	25-26	창	창	112	112	112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70	공주	동현	25-28	25-28	창	창	37	37	37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71	공주	동현	25-22	25-22	전	전	5	5	5	국토해양부	국					
72	공주	동현	25-30	25-30	전	전	29	29	29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73	공주	동현	25-21	25-21	전	전	1	1	1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74	공주	동현	25-29	25-29	전	전	19	19	19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75	공주	동현	25-27	25-27	전	전	275	275	275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	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 계	
76	공주	동현	19-70	19-70	임	임	1,109	1,109	1,109	공주시	공					
77	공주	동현	19-60	19-60	임	임	59	59	59	공주시	공					
78	공주	동현	19-25	19-25	임	임	12	12	12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79	공주	동현	19-69	19-69	전	전	120	120	120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80	공주	동현	19-24	19-24	전	전	233	233	23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81	공주	동현	19-74	19-74	임	임	449	449	449	공주시	공					
82	공주	동현	19-68	19-68	전	전	933	933	93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83	공주	동현	19-76	19-76	임	임	148	148	148	공주시	공					
84	공주	동현	19-47	19-47	과	과	15	15	15	공주시	공					
85	공주	동현	19-78	19-78	전	전	439	439	439	공주시	공					
86	공주	동현	19-77	19-77	전	전	8	8	8	공주시	공					
87	공주	동현	19-18	19-18	전	전	19	19	19	공주시	공					
88	공주	동현	19-66	19-66	임	임	701	701	701	공주시	공					
89	공주	동현	649	649	도	도	4,360	159	159	국토해양부	국					
90	공주	동현	76-9	76-9	수	수	365	365	365	국토해양부	국					
91	공주	동현	76-3	76-3	전	전	336	326	326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92	공주	동현	646-4	646-4	구	구	419	219	219	농림수산식품부	국					
93	공주	동현	643-11	643-11	도	도	348	171	171	국토해양부	국					
94	공주	동현	72-3	72-3	수	수	16	16	16	국토해양부	국					
95	공주	동현	101-4	101-4	전	전	1,699	348	348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96	공주	동현	72-2	72-2	전	전	291	291	291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97	공주	동현	102-17	102-17	도	도	177	83	83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98	공주	동현	102-18	102-18	전	전	490	74	74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국					
99	공주	동현	650	650	도	도	2,326	732	732	국토해양부	국					
100	공주	동현	102-5	102-5	도	도	195	146	146	국토해양부	국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01	공주	동현	102-14	102-14	수	수	127	127	127	국토해양부	국				
102	공주	동현	102-12	102-12	대	대	115	115	1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03	공주	동현	102-13	102-13	대	대	191	118	118	국토해양부	국				
104	공주	동현	102-15	102-15	대	대	433	433	4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05	공주	동현	646-5	646-5	구	구	153	153	153	농림수산식품부	국				
106	공주	동현	69-1	69-1	답	답	1,781	1,781	1,78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07	공주	동현	102-1		대		123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금회해제
108	공주	동현	646-1	646-1	구	구	1,020	6	6	농림수산식품부	국				
109	공주	동현	643-8	643-8	도	도	362	22	22	국토해양부	국				
110	공주	동현	103	103-1	답	답	3	3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1	공주	동현	643-4	643-4	도	도	126	9	9	국토해양부	국				
112	공주	동현	70-8	70-8	답	답	35	35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3	공주	동현	70-2	70-2	답	답	1,286	1,286	1,2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4	공주	동현	70-7	70-7	답	답	432	432	4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5	공주	동현	71-6	71-6	답	답	238	238	2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16	공주	동현	641-9	641-9	구	구	53	53	53	농림수산식품부	국				
117	공주	동현	641-12	641-12	구	구	39	39	39	농림수산식품부	국				
118	공주	동현	19-63	19-63	전	전	7	7	7	공주시	공				
119	공주	동현	19-73	19-73	전	전	83	83	8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20	공주	동현	19-85	19-85	전	전	16	16	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21	공주	동현	19-58	19-58	전	전	8	8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22	공주	동현	19-84	19-84	임	임	24	24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123	공주	동현	19-72	19-72	임	임	99	99	99	공주시	공				
124	공주	동현	19-62	19-62	임	임	2	2	2	공주시	공				
125	공주	동현	19-61	19-61	임	임	60	60	60	공주시	공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건물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26	공주	동현	19-71	19-71	임	임	184	184	184	공주시	공				
127	공주	동현	19-83	19-83	임	임	42	42	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28	공주	동현	19-29		임		11	9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금회해제
129	공주	동현	19-42	19-42	임	임	30	30	30	공주시	공				
130	공주	동현	19-26		임		4	4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금회해제
131	공주	동현	19-27		임		7	7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금회해제
132	공주	동현	19-81	19-81	임	임	80	80	80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33	공주	동현	19-82	19-82	임	임	45	45	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34	공주	동현	20-2	20-2	답	답	163	163	163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35	공주	동현	20	20-4	전	전	38	35	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36	공주	동현	19-67	19-67	전	전	139	139	1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37	공주	동현	19-23	19-23	전	전	79	79	79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38	공주	동현	640-10	640-10	도	도	40	40	40	국토해양부	국				
139	공주	동현	19-59	19-59	과	과	27	27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40	공주	동현	19-86	19-86	과	과	20	20	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41	공주	동현	19-75	19-75	과	과	732	432	432	공주시	공				
142	공주	동현	19-79	19-79	임	임	57	57	57	공주시	공				
143	공주	동현	19-80	19-80	전	전	336	336	336	공주시	공				
144	공주	동현	19-22		임		1514	8							금회해제
145	공주	동현	1-26	1-26	전	전	310	310	3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146	공주	동현	1-27	1-27	전	전	138	138	1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국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4. 2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큰길 1558-64 (검상동) 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4.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역장부 주소연장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소록동 627	2018.04.20	신축	20100112	비어(비어)임대고 건물 벽면 구조변경(벽면구조 변경)과 지면 다짐(지면 다짐)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연장(도로연장)을 시행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2	충청남도 공주시 김산동 59-40	2018.04.20	신축	20090825	기존 도로명칭 활용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3	충청남도 공주시 송인동 495	2018.04.20	신축	20100112	해당 지면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16	2018.04.20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명칭 반영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52-25	2018.04.20	신축	20100202	일반번호명식과 도로명칭 반영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30-9	2018.04.20	신축	20100112	마을에 숫이 없었다 하여 숫결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25-8	2018.04.20	신축	20100112	마을에 숫이 없었다 하여 숫결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25-7, 330-15	2018.04.20	신축	20100112	마을에 숫이 없었다 하여 숫결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30-14, 325-6	2018.04.20	신축	20100112	마을에 숫이 없었다 하여 숫결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안천리 288-4	2018.04.20	신축	20100112	민초리를 관통하는 주소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안전결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의리 283-17	2018.04.20	신축	20100112	길 주변에 일제시대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공장으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회현리 416	2018.04.20	신축	20100112	마을을 관 도랑이 통과 있다 하여 중간 지면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88, 288-1, 289-3, 289-5	2018.04.20	신축	20100202	반포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반포초교결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신진리 602-7	2018.04.20	신축	20100112	도로의 분기점(도로분기)이 있고 마을중심의 안락가 도깨비를 향하는 길이라 하여, 도깨비길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97-2, 597-8	2018.04.20	신축	20100112	바위도 되어 있는 신이라 하여 중간 지면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6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장원리 119	2018.04.20	신축	20100112	동명이 있었다 하여 동명결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72-1	2018.04.20	신축	20100112	옥성진 진체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하여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85-7	2018.04.20	신축	20100112	마을에 매화나무지팡이의 명칭이 있다 하여 매양길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19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봉곡리 150-1	2018.04.20	신축	20100112	용수리란 풀자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용수봉자길로 부여	고시후 도로명주소 연장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4. 2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4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사는유후
여부전	여부법	여부전	여부법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에 2018. 04. 20. 고시 법 도로명주소조 제19의거 관계 공조있어거 다니서 주소로 유비기됨용.
- 공공치있거서 리하·있각상고 다에 재종 공사지 주소(소당해)에 변경치있거서 도로명주소로 여부합됨용.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에 건물번호관 여부는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19의거서 정한 절차거 따라 신청할 수 다습됨용.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7의제7항거 관계 경변 도로명이 고시된 날사터 3년이 해난 법거 여부할 수 다습됨용.

○ 참고사항

- 공동주택관 부우 종전주소관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관 지세주소에 공조있어관 재종 공사지 치당된 주소로 한용.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4. 2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93 (신관동) 외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4.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